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8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 마.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 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 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 사. 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 아. 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 자. 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 (안 제25조의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 라. 기 타 : 없 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위촉위원”을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
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
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을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로, “위원에게 공정한”을 “공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참여할 수 없다”를 “참여하지 못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로, “(回避)해야”를 “(回避)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를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법 제4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설립 가능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나 강원자치도 및 시·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도 조례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명시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고 시·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50 이내의 범위에서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이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을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와 건의 대상 지역의 위치, 필지 조서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부대장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이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3(이유제시 절차 및 내용)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건의기관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의사항의 내용별로 반영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조정 또는 협력이 필요한 도내 민·관·군 관련 주요 현안
2.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도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고위공무원, 강원부지사 중 1명)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 및 지역개발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2. 그 밖에 국방 또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 협력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5(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73조의9제4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

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6(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내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2.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공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부실시공 방지, 성실시공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영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실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1. 정기조사 :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실시
2. 수시조사 :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목적, 대상, 기간 및 조사사항 등을 포함한 협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사유, 결과, 조치 의견 및 처분 필요성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경석의 매각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른 경석의 매각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3조의16제1항의 매각 대상 경석은 도지사가 법 제73조의16제3항에 따라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산지에 적치된 경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매각 절차 종료 전까지 국유림 내 경석 적치 산지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유예하며, 유예 기간 동안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등 관리 책임은 도지사가 진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매각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 기타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강원자치도는 경석 매각 후 매각에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1. 매각 수수료 및 공고 비용
2. 경석 가치 평가 및 성분 분석에 필요한 비용
3. 매각 대상 부지 경계 설정에 필요한 측량비 등의 비용
4.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및 기타 매각 절차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⑥ 도지사는 석탄경석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8(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에 따라 법 제73조의16제1항부터 제73조의16제4항까지의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방법
3.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17에 따른 통보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산지관리 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은 산지관리 영향평가 등을 할 때는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4부터 제73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지관리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에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유예 규정의 유효기간) 제25조의7제2항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유예규정은 법 제73조의17에 따라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 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제3호에 <u>따른 위촉위원</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 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u><신 설></u>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의 구성)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u> <u>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u> <u>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u> <u>의 장</u> ② ----- <u>따라 위촉한</u> <u>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u> <u>다)</u> -----. ----- ----- ----- -----. <u>제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u> <u>다.</u>

	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u> 2.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u>공직선거법</u>」 및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u>국가공무원법</u>」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생략)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u>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민법</u>」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 3. -----

안전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5.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

----- 수행하
고 있거나 수행한 -----

4. 5. (현행과 같음)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
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
----- 공정한 -----

----- . -----
----- 참
여하지 못한다.

③ -----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回避)하여
야 -----
 -----.

제4조(위원의 해촉) -----
위촉위원-----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

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생 략)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7일

-----.
-----.

③ -----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포함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
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
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

3. -----

----- 국무
조정실장이 -----

③ ----- 결격
사유, 제척 · 기피 · 회피, -----

----- .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
회”로, “국무총리”는 “국무조정
실장”으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
다.

② 수립하
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신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법 제4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설립 가능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나 강원자치도 및 시·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도 조례 및 시·군 조례로 정

<신 설>

하는 지원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명시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고 시·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

<신 설>

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50 이
내의 범위에서 법 제48조의7제4
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외국
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도
교육감이 강원자치도의 교육여
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
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
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 ① 도지사 또는 관
할 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5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을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등 구
체적인 사유와 건의 대상 지역
의 위치, 필지 조서 등을 포함하
여 문서로 관할부대장등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
대장등은 군사작전,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관할부대장의 검

<신 설>

<신 설>

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이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3(이유제시 절차 및 내용)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건의기관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의사항의 내용별로 반영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

영)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조정 또는 협력이 필요한 도내 민·관·군 관련 주요 현안

2.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도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고위공무원, 강원부지사 중 1명)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 및 지역개발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2. 그 밖에 국방 또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 협력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신 설>

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5(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73조의9제4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신 설>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6(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
2.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 중

이거나 시공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부실시공 방지, 성실시공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영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실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1. 정기조사 :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신 설>

실시

2. 수시조사 :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목적, 대상, 기간 및 조사 사항 등을 포함한 협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사유, 결과, 조치 의견 및 처분 필요성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경석의 매각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른 경석의 매각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3조의16제1항의 매각 대상 경석은 도지사가 법 제73조의16제3항에 따라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산지에 적치된 경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매각 절차 종료 전까지 국유림 내 경석 적치 산지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유예하며, 유예 기간 동안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등 관리 책임은 도지사가 진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매각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 기타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⑤ 강원자치도는 경석 매각 후 매각에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1. 매각 수수료 및 공고 비용
2. 경석 가치 평가 및 성분 분석에 필요한 비용
3. 매각 대상 부지 경계 설정에 필요한 측량비 등의 비용
4.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및 기타 매각 절차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⑥ 도지사는 석탄경석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8(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에 따라 법 제73조의16제1항부터 제73조의16제4항까지의 특례의 운

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방법

3.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산지관리 영향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17에 따른 통보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지관리 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산지관리 영향평가 등을 할 때는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4부터 제73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지관리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20